

忠州市議會 第149回 臨時會
2010.10.27 (수) 11:00

條例案審查報告書

-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5)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條例案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10. 07	2010.10.08	2010.10.20	2010.10.20	총무과장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총무과장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총무과장
(4)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	"	"	환경과장
(5)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환경과장

2. 제안설명요지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읍면동사무소 신축이전 및 토지합병으로 청사의 소재지를 현 위치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은면 청사 소재지를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486-3번지에서 539-2번지로 변경
- 산척면 청사 소재지를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355-3번지에서 1253-1번지로 변경
- 지현동 청사 소재지를 충주시 지현동 511번지에서 507번지로 변경
- 연수동 청사 소재지를 충주시 연수동 529-6번지에서 529-1번지로 변경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동촌사거리 형설로(4차선)를 기준으로 교현동, 용산동과 성남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교현동, 용산동 일부지역이 도로개설시 성남동 지역으로 떨어져 있어
- 형설로 주변 불합리한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충주시 교현동 7필지($138m^2$)를 성남동으로 편입
- 충주시 용산동 4필지 ($79m^2$)를 성남동으로 편입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09년 농림축산부문 신설로 5개 수상부분에 대한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도모
- 시상대상자에게 꽂다발 수여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 위반, 조례에 꽂다발 수여에 대한 근거 문안을 추가하여 품위있는 수상식 연출

2) 주요내용

- 공적심사위원회 조정 : 21명 \Leftrightarrow 26명
- 시상 : 시상대상자에게 상패와 꽂다발 수여

(4)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 활성화 등 시차원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의 녹색성장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성장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되, 처음 계획수립은 정부계획에 맞춰 2011년~2013년까지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9조)
- 녹색성장 주요시책의 심의·자문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제19조)
-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녹색경제를 촉진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녹색정상 사회를 구현하도록 함 (안 제20조~제24조)
- 시민과 기업의 녹색생활 촉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녹색실천운동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25조~제26조)

(5)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하고 국민개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혜택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 수수료의 감면 신설(제11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감면 혜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은면, 산척면, 지현동, 연수동사무소의 소재지가 토지합병과 청사신축 이전으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은면사무소는 1998년 5월 27일 토지합병으로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486-3번지에서 539-2번지로,

산척면사무소는 2009년 1월 12일 청사신축 이전으로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355-3번지에서 1253-1번지로,

지현동주민센터는 2007년 11월 26일 청사신축 이전으로
충주시 지현동 511번지에서 507번지로,

연수동주민센터는 2010년 5월 10일 청사신축 이전으로
충주시 연수동 529-6번지에서 529-1번지로 변경되었음

○ 검토결과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고,

본 조례개정안은 토지의 합병과 청사 신축이전으로 청사의 소재지가
변경된 사항이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안은

등촌사거리에서 충주공업고등학교로 가는 도로(형설로)의 중홍S클래스아파트 진입로 입구 4거리 주변은 교현동, 용산동과 성남동은 4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교현동, 용산동 일부지역이 도로개설로 분리되어 성남동 지역에 떨어져 있어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해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교현동, 용산동 일부지역을 성남동에 편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남동에 편입되는 지역은 교현동 257-31번지 등 7필지 138㎡와 용산동 377번지 등 4필지 79㎡로 총 11필지 217㎡으로 도로 확장으로 인해 교현동과 용산동에서 분리되어 성남동 지역에 인접해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협소하여 단독 부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성남동 부지와 같이 연계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도 성남동으로 편입하여 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으로

○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성남동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대상 시상부문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증원하고

시상대상자에게 상패뿐만 아니라 꽃다발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6조 3항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21명에서 26명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이 “문화 예술 언론부문”, “교육 체육부문”,
“산업경제부문”, “사회봉사 윤리부문” 등 4개 부문에서

2009년에 농림축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진작과
충주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분야”를 신설하여
5개 부문으로 확대되어

시상부문에 대해 보다 폭 넓은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조치이며

- 안 제9조는 꽃다발 수여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되어 조례에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규정으로

시상대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상에 이르지 않는 꽃다발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무방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안 제9조에 시상대상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4)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시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화하고 관련시책을 체계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는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0조 내지 제19조는 충주시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 내지 제24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안 제25조 내지 제26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해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및 교육·홍보를 정하는 내용임.

- 이 조례 제정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사항이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법령상 임의사항이나 충청북도에서 행정안전부 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음.
-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시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화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령 인용조항을 조문에 맞게 일치시키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개정 사항은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법령의 인용조항에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의 2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불합리한 지역은 수시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가?

○답변 : 수시로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음

▶질의 :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곳이 2건 뿐인가?

○답변 : 지금까지는 2건임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위원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답변 : 시상부문에 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나 시의원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4)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질의 : 없음

(5)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없음

5. 심사결과

-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4)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 (5)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끝.